

자동차보험 유형별 보상 사례

–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중과실 사고 –

김희중

(한국 자동차보험(주) 차장)

지난 해부터 우리 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금년 초에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의 자동차 사고 발생 건수는 그 전년에 비하여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사고 예방 의식이 고양되어야 하나, 그 외에도 교통 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의 확충은 물론, 교통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의 정비를 통한 사고 예방적 기능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현상만으로 판단해 보아도 교통 법규 위반과 교통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무관심이야 말로 우리 나라의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를 개선하는 데는 교통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제재의 기능이 강조되기도 한다.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인 제재는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으나,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회사내의 징계 규정에 의한 징계나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비난이 운전자로 하여금 심리적 부담을 주어 사전에 사고 예방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적인 제재는 아니다.

운전자에 대한 사고 예방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제재에는 행정 처분, 민사 책임, 형사 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 처분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령 등에 위반하였을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자동차의 운행 정지, 범칙금의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되며, 민사 책임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운전자로서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되지만, 대부분이 종합보험의 가입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보험 회사에 전가시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형사 책임의 경우인데, 운전자로서는 벌금은 물론 인신 구속이나 징역 등 체형이 가해지는 강한 제재임과 동시에 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그 효과를 가장 큰 제재라 할 수 있다.

교통 범죄에 적용되는 형사 법규로서는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특정 범죄기증처벌법, 도로교통법 등이 있다.

그러나 빵소니 사고에 대하여 특정범죄기증처벌법이 적용되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형사 책임은 교특법이 적용되는 사고이다. 이는 형법상의 과실범중에서 교통 사고에 대하여만 형사 처벌의 특례를 인정하기 위하여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교특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현행 교특법상에는 업무상 과실(즉, 운전상의 과실) 또는 중과실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가·피해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특법이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8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8대 중과실 사고는

- ① 신호 위반
- ② 중앙선 침범
- ③ 과속
- ④ 추월 위반
- ⑤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⑥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횡단 보도 사고)
- ⑦ 무면허 운전
- ⑧ 주취 운전, 약물에 의한 비정 상적인 운전 등에 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이다.



이와 같이 사고 당시의 운전이 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몇가지 사례를 통하여 명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평소 운전 과정에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사례 I〉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에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에 주의하지 않고 좌회전하던 중, 녹색 신호에 따라 반대 방향에서 직진해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 차량의 탑승자가 부상한 경우.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할 수는 있으나, 위 경우와 같이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교통을 방해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호 위

반이 되어 교통법상의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사례 II〉

운전자가 도로의 우측 차선을 따라 정상 속도로 진행 중,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갑자기 횡단하는 성명 불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다른 차량을 충돌, 인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법상 중과실 사고인 중앙선 침범은 사고 발생 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위 경우처럼 정상 속도로 운행하다가 무단 횡단인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 급제동하면서 중앙선을 넘은 경우는 교통법

상 중과실 사고인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례 III〉

운전자가 진행 차선을 따라 감속 운전하던 중, 추월하는 버스를 피하려고 급제동한 까닭에 차체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넘게 되어 반대 차선의 진행차량과 충돌, 인사 사고를 야기한 경우.

이 경우도 비록 사고 발생 지점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지만 사고 발생 원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것 때문은 아니며, 자기 차선으로 감속 운행하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눈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이므로 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을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사례 IV〉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상에서 운전자가 선행 차량을 추월하여 나아가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상대 차량을 충돌한 경우.

황색 점선의 중앙선 표시는 반대 방향의 교통에 유의하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 할 수 있으므로 위 경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앞차량을 추월할 때에는 선행 차량의 좌측으로,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추월 방법 위반으로 교통법상 중과실 사고에 해당된다. ⓠ